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9.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9. 10.

다. 상정일자 :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 9.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가. 제안이유

마포구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3) 지원 및 지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12조)
- 4) 평가 및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3. 검토보고 (최종의 전문위원)

가. 제안경위 및 제정취지

- 동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9.9.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7호로 2019.9.10.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임.
- 제정취지는 국가의 발전과 후손의 양육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사회의 원로로서 존경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의견

(1)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4년 11.96%에서 2019.6월 기준으로 13.69%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 노인 인구 또한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¹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1〉 마포구 노인 인구

(단위 :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인 구 수	395,830	398,351	390,887	385,783	375,077	374,422
65세 이상 수	47,360	48,598	48,303	49,615	50,544	51,279
65세 이상 비율	11.96	12.19	12.35	12.86	13.47	13.6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마포구 행정포털)

〈표 2〉 한국 노인 인구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5세 이상 비율 (%)	12.4	12.8	13.2	13.8	14.3	14.9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 유엔 등 국제기구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1981.6.5.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 제고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 강북구 등 10개 구에서 조례 등이 제정된 바 있음(2019.9.기준). 이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¹²⁾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2)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에게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안전점검, 그리고 경로당 운영의 보조금 정산과 지도·감독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노인복지법」 제47조¹³⁾, 동 시행령 제24조¹⁴⁾) 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노인복지법」 제37조의2¹⁵⁾)를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경로당 이용

12)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4)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15)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에게 수입·지출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지도 감독과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음.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16) 및 제23조17)와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 등에 근거한 바,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3〉 마포구 경로당 현황

구분	경로당 수	회원 수	지원운영비/월	양곡지원/개소	기타지원
2019년 기준	154개소	5,117명	6,564만원	8포	난방비: 58개소 냉방비: 51개소

(출처: 마포구 노인장애인과)

- 다만,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와 경로당 회장이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점검표와 점검 주기, 점검요령 및 조치요령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 규칙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16)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7)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